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 ○○.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로 특정 민원인이 제기 한 민원 및 2차례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유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라 비송사건을 의뢰하여 다수가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받은 모든 과태료 부과 처분(○○건)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단지 내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다수의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 받았다.

나.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사정을 무시한 행위이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므로 모든 과태료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인은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서 시작하여 상대를 배척 할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20○○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제출한 민원이 약○○건에 해당하며 민원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담당자를 직무유기를 한다는 이유로 구 감사실, 시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으로 계속 해당 아파트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나. 아파트 관리 분야가 폭이 넓고, 적용되는 법령이 많아 관리소장의 어려움 및 자체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총○○건 중 ○○건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감경부과(최대 50%)하였으나 모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1건은 확정판결을 받아 과태료 확정부과 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과태료 재판 중이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되어야하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4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 ○○. ○○.부터 근무해오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 ○○. ○○. ~ 20○○. ○○. ○○. 특정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 및 ○○차례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총 ○○건, 금액으로는 약○○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 중 ○○건은 최대 50% 감경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모든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여 1건은 확정판결을 받아 과태료를 확정부과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과태료 재판 중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파트 단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과태료 부과 처분(20○○. ○○. ○○.에서 20○○. ○○. ○○.까지 부과된 ○○건)에 대해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고 규정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각 호에는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행정심판법 제3조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는 각하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으로 과태료의 부과와 그 이의제기 절차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 역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여 그 판단이 관할 법원에서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에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이의제기 절차도 같은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판단되는 사항인 바,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